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Standards for Aircraft Technical Standard
Order Authorization**

국 토 교 통 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00호

「항공안전법」 제27조에 따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 기록표 (RECORD OF AMENDMENTS)				
개정차수 (Revision No.)	개정일자 (Revision Data)	철입일자 (Insertion Data)	철입자 (Insertion by)	근 거 (Reference)
원 판	2005.06.02			제정(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5-27호)
1차	2006.07.04			개정(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6-15호)
2차	2006.07.18			개정(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6-54호)
3차	2007.06.16			개정(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7-10호)
4차	2007.11.16			개정(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7-19호)
5차	2008.04.08			개정(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8-38호)
6차	2008.09.25			개정(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8-71호)
7차	2009.06.11			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26호)
8차	2009.11.26			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03호)
9차	2010.11.12			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99호)
10차	2012.03.06			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7호)
11차	2013.02.22			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10호)
12차	2013.04.15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8호)
13차	2013.12.03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1호)
14차	2015.01.30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6호)
15차	2017.06.02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61호)
16차	2018.07.12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46호)
17차	2019.12.30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004호)
18차	2022.02.22			개 정 (국토부 고시 제2022-99호) 표준서 제정(6종) LODA 내용 추가

제정 : 2005.06.02

개정 : 2022.00.00

목 차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Standards for Aircraft Technical Standard Order Authorization)	
--	--

제1조 목 적(Purpose)	1
제2조 적용 범위(Applicability)	1
제3조 정 의(Definition)	1
제4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대상(Eligibility of KTSO article design approval)	2
제5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표시 권한(Markings privilege to approved KTSO article)	2
제6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Application for KTSOA)	2
제7조 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적용(Application of KTSO)	3
제8조 설계적합성(Design conformity)	3
제9조 생산승인(Production approval)	3
제10조 품질관리자료(Quality control data)	4
제11조 감항성유지(Instruction for continued airworthiness)	4
제12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교부(Issuance of KTSO design approval)	5
제13조 형식승인 소지자의 의무(KTSO design approval holder's responsibility)	5
제14조 성능표준 불일치 신청 : (Request of performance standard deviation)	5
제15조 설계변경 관리(Design change control)	6
제16조 기록 보관(Record keeping)	7
제17조 식별표시(Mark and identification)	7
제18조 국토교통부의 검사 수검(Taking MLTM inspection)	8
제19조 사후인증관리(Certificate management after certificate issuance)	8
제20조 신청서, 보고서 또는 기록의 위조 금지(Prohibition of forgery to application, report or record)	8
제21조 고장, 기능장애 및 결함 보고(Report of failure, malfunction, and fault)	9
제22조 <삭 제>	9
제23조 외국의 기술표준품 형식설계 승인(Design approval to foreign approved KTSO article)	9
제24조 수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Conformity inspection for design	

approval to imported KTSO article)	10
제25조 <삭 제>	10
제26조 <삭 제>	10
제27조 유효기간(Duration of certificate)	10
제28조 수수료(Fee)	10
제29조 고시의 유효기간(Expiration Date)	10
부 칙(Addenda)	10
제1조 시행일(Effective date)	10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Standards for Aircraft Technical Standard Order Authorization)

개정 2017.06.02(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61호)

개정 2018.07.12(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46호)

개정 2019.12.30.(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004호)

개정 2022.02.22.(국토교통부고시 제2022-99호)

개정 2022.00.00.(국토교통부고시 제2022-0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절차, 형식승인서 소지자의 의무, 수출입되는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확인 절차, 기술표준품 표준서(최소성능표준 포함) 등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표준품”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본 규정에서 지정한 재료, 부품, 공정 또는 장비품(이하 “기술표준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기술표준품표준서”라 함은 기술표준품의 최소성능표준을 말한다.
3. “최소성능표준”이라 함은 기술표준품의 성능에 대한 최소한의 기술적 요구조건을 말한다.
4.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특정한 기술표준품 표준서를 만족하는 품목의 제작자에게 교부하는 설계와 생산에 대한 승인을 말한다.
5.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제작되어 대한민국으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술표준품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에게 교부하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대한 확인을 말한다.
6. 제작자라 함은 기술표준품(외부에서 조달하는 부품, 관련 공정 및 용역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기 위해 해당 기술표준품의 설계와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경미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따라 품목을 제조하는 제작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별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설계변경(중요 설계변경이 아닌)을 말한다.
8. “중요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

- 기 위해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한 설계변경을 말한다.
9.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란 당해 기술표준품 표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능표준과 다른 표준을 사용하여 설계 적합성을 입증 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의 취소”라 함은 특정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가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철회되었으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따라 특정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말한다.
 11. “LODA(Letter of design approval)”라 함은 우리부로 인증받은 TSO 품목이 항공안전협정(BASA) 이행절차서(IPA)에 3.4에 따라 FAA로부터 설계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본 규정에서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술표준품을 설계·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표시 권한)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 이외의 자는 기술표준품 표시를 할 수 없다.

제6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 ①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기술표준품형식승인 신청서 및 별지1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적합성 확인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서에는 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별지 1호의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적합성 확인서는 적절한 시기에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1. 기술표준품 인증계획서
2. 설계도면·설계도면목록 및 부품목록
3. 제조규격서 및 제품사양서
4. 품질관리규정
5. 해당 기술표준품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이하 “기술표준품 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6.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신청 단계에서 향후 경미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신청자는 변경표시용 문자 또는 번호(또는 문자와 번호의 조합)를 수시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해당 신청서에 품목의 기본 모델 번호와 구성품의 부품번호 뒤에 괄호를

사용할 수 있다.

- ④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청서류 및 기술자료가 당해 기술표준품의 적합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통보받은 경우, 해당사항을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신청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한 지정된 기일까지 신청서류 및 기술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제7조(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적용) ①신청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최신판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표준품 표준서는 별표1과 같다.

제8조(설계적합성) ①신청자는 당해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대해 기술표준품이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적합성 확인서를 통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당해 기술표준품 표준서의 해당 요구조건에 대해 설계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설계 적합성 입증방법으로는 분석(Analysis), 시험(Test), 경험자료(Data), 기타(Other)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③신청자는 설계 적합성을 입증하는 적합성 입증보고서 및 관련 기술자료의 목록을 적합성 확인서에 기록하고 이들을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거나 관련 기술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생산승인) ①신청자는 당해 설계 적합성 평가를 통하여 검증된 설계에 합치하는 기술표준품을 대량으로 복제 생산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신청자는 생산시설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승인 요구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신청자는 당해 기술표준품의 제작에 있어서 기능, 성능, 안전상 중요한 부분품을 공급업체의 시설에서 제작하는 경우, 해당 공급업체의 품질관리체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승인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신청자의 품질관리체계는 생산시설의 규모, 생산량 및 생산제품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수준과 범위로 구축될 수 있지만, 당해 기술표준품의 설계에 대한 합치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절차, 검사 및 시험, 식별표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당해 기술표준품을 대량으로 복제 생산하기 전에 당해 기술표준품

에 대한 생산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품질관리체계가 승인된 설계에 합치하는 품목을 대량으로 복제 생산하는데 부적합하거나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관리자료) 신청자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시 개별 기술표준품이 형식설계에 합치하고 안전한 작동상태에 있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검사 및 시험절차와 다음 각호의 품질관리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영자 및 관련조직을 포함하는 품질관리 조직도와 품질관리 조직에 부과된 책임과 위임 권한을 설명하는 자료
2. 공급업체에서 생산되는 원자재, 구매품, 그리고 부품과 부분 조립품에 대한 검사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3. 모든 특수제조공정에 대한 식별 작업, 완성품에 대한 최종시험절차, 그리고 개별 부품 및 조립품에 대한 생산검사 방법 및 공정관리 방법에 대한 자료
4. 부적합 품목에 대한 자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료 및 불합격품의 처리 등을 포함하는 자재심의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5. 도면, 규격, 그리고 품질관리절차에 따른 최신의 변경사항을 검사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6. 검사장소의 위치와 형태를 보여주는 목록 또는 배치도

제11조(감항성유지) ①신청자는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감항성유지에 필요한 자료,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장착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감항성유지지침을 작성하여 항공기등의 소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항성유지에 필요한 자료, 매뉴얼 등은 당해 기술표준품의 장착 매뉴얼 또는 정비 매뉴얼 등에 포함하여 작성하거나 별도의 문서로 작성될 수 있다. 또한 감항성유지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관련 자료 또는 매뉴얼에 반영하여 당해 기술표준품 납품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감항성유지 관련 자료 또는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는 신청서에 해당 품목에 대해 감항성유지지침이 불필요하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신청자는 당해 기술표준품의 고장·기능장애·결함 발생 시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교부) ①신청자는 당해 기술표준품 표준서와 제8조 내지 제11조의 요구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신청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에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품목에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을 얻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제13조(형식승인 소지자의 준수사항)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소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일자에 유효한 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요구조건에 적합하게 당해 기술표준품을 제작할 것.
2. 법 제27조 및 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 및 본 고시의 제20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필요한 모든 시험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품질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4.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모든 기술자료 및 기록을 유지 보관할 것.
5.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기술표준품에 영구적이고 읽기 쉬운 방법으로 식별표시할 것.
6.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7. <삭 제>
8. <삭 제>
9. 당해 기술표준품의 제조시설을 이전·축소 또는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할 것.

제14조(성능표준 불일치 신청 : Deviation) ①신청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시험절차 그리고/또는 다른 RTCA 표준 대신에 이들 표준의 최신판이나 RTCA/DO-160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환경시험절차에 대한 성능표준 불일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RTCA/DO-160에서 일부를 발체하고 SAE 문서에서 나머지를 발체하는 식으로 상호 다른 문서의 환경 조건 및 시험 절차를 혼용해서는 안 된다.
2.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규정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성능표준의 경우, RTCA/DO-178B의 제2항 내지 제11항 또는 이전 판 대신에 최신 개정판

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신청자는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에 대한 승인을 요청시 다음 각호의 정보와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성능규격과의 차이에 대한 기록
2.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 내용이 설계특성 또는 요소에 의해 당해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규정된 성능표준의 안전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됨을 입증하는 자료
3.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가 감항성유지와 관련되는 경우,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 내용을 반영한 장착매뉴얼 및/또는 구성품 정비매뉴얼(운영상의 제한사항 또는 장착제한사항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

③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료 보완을 요청할 경우 추가적으로 입증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설계변경 관리) ①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한 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도 경미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형식승인 소지자는 경미한 설계변경과 관련된 자료를 30일 또는 해당 기술표준품의 납품일 이내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경미한 설계변경이 적용된 기술표준품은 원래의 모델번호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경미한 설계 변경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품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2. 형식승인 소지자는 변경 내용이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형식승인 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요구된 모든 검사 및 시험을 다시 수행하여야 한다.
4. 형식승인 소지자는 품질관리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5. 형식승인 소지자는 제출한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요 설계변경 사항으로 판단하여 통보하는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 가. 형식승인 소지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형식 또는 모델번호로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 나. 형식승인 소지자는 설계변경 내용을 적용하여 이미 제조한 품목에 대해 기술표준품의 형식 또는 모델번호의 변경과 표식 불일치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품질관리규정 또는 검사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중요 설계변경에 대한 관리. 중요 설계변경의 경우, 형식승인 소지자는 해당

설계변경 이전에, 당해 품목에 대해 신규 형식 또는 모델번호를 부여하여 제6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표준품의 불안정한 상태를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형식승인 소지자는 다음 각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 2. 안전성을 갖춘 기술표준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고 불충분한 성능을 개선하여야 한다.
 - 3. 중요한 설계변경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서에 규정된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④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 이외의 자는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설계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제16조(기록 보관) ①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고 제작하는 개별 품목에 대한 다음 각호의 기록을 제작시설 내에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한다.

- 1. 도면과 규격서를 포함한 개별 형식 또는 모델의 관련 기술자료
- 2.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이 수행되고 문서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검사기록
- ②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는 제1항제1호에 기술된 기록을 품목의 생산중단 시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제1항의 각호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는 제1항제2호에 기술된 기록을 형식승인이 유효한 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7조(식별표시) ①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소지자는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영구적이고 읽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①기술표준품을 제작하는 자는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45의 45.15(b)항에 의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②당해 기술표준품의 구성품에 디지털 컴퓨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부품번호를 부여하거나 각각에 서로 다른 부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③당해 기술표준품이 매우 작거나 식별표시를 하기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태그 등을 사용하거나 포장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 ④당해 기술표준품에 다수의 기술표준품 표준서가 적용된 경우, 명판에는 주요 기술표준품 표준서 번호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다른 기술표준품 표준서

번호는 주요 기술표준품의 장착 매뉴얼 첫 부분에 목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⑤당해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서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기술표준품 표준서 번호 뒤에 "(Dev)"라는 표시를 추가하여야 한다.

제18조(국토교통부의 검사 수검) ①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형식승인 소지자가 제작하는 당해 기술표준품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검사
2. 모든 시험에 대한 참관
3. 제조 설비에 대한 검사
4. 기술표준품에 대한 기술자료 검사

- ②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는 당해 기술표준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수출용 감항증명서 또는 감항성인증서 발행을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사후인증관리) ①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는 사후인증관리를 위한 정기 및 수시 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형식승인 소지자는 사후인증관리를 위해 다음의 각호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기 또는 필요시 수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과 관련된 승인조건 및 절차에 대한 준수
2.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대한 당해 기술표준품의 설계적합성 유지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승인 요구조건에 적합한 품질관리체계 유지
4. 당해 기술표준품의 감항성유지관리

- ③형식승인 소지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기술표준품의 불안정한 상태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신청서, 보고서 또는 기록의 위조 금지) 형식승인 소지자 및 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서에 대한 부정한 방법이나 의도적인 허위 진술
2. 기술표준품 형식승인과 관련된 모든 요구조건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모든 기록 또는 보고서 기록사항에 대한 부정한 방법 또는 의도적인 허위사실 기재
3. 부정한 목적의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복제
4.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의 위조

제21조(고장, 기능장애 및 결함 보고) ① 형식승인 소지자는 항공안전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기술표준품(부품 및 공정 포함)의 모든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⑦ <삭 제>

제22조 <삭 제>

제23조(외국의 기술표준품 형식설계 승인) ① 법 제27조 및 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 또는 형식승인 신청자는 대한민국과 기술표준품의 수출입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하 협정체결국이라 한다)의 기술표준품 형식설계 승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정체결국의 형식설계 승인을 받고자 자는 협정체결국 감항당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 이행절차서(IPA)에 따라 LODA를 받으려 할 경우, FAA에서 현재 유효한 TSO 기준만 신청이 가능하다.

③ 신청자는 기술표준품 형식설계 승인서 접수 및 수출용 감항증명 표찰 교부 이후 협정체결국의 요건에 따라 당해 품목에 기술표준품 표시를 할 수 있다.

제24조(수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 ① 법 제27조제1항, 규칙 제56조제3호 및 본 훈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기술표준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국의 감항당국을 통해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을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자국의 감항당국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 기술표준품에 대해 검사와 시험이 적합하게 수행되었으며 협정체결국의 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보장하는 협정체결국 감항당국의 확인서
2.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③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서를 교부하고 자국의 감항당국이 수출용 감항증명서를 교부한 이후, 법 제27조 및 해당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명시된 기술표준품 표시 요구조건에 따라서 기술표준품에 대하여 기술표준품 표시를 할 수 있다. 또한 수출하는 개별 기술표준품에는 자국에서 발행한 수출용 감항증명서를 동봉하여야 한다.

⑤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기술표준품의 설계 및 생산에 대한 모든 책임과 해

당 기술표준품에 대한 수출국가의 형식승인 취소 시 이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는 수출국가에 있다.

제25조 <삭 제>

제26조 <삭 제>

제27조(유효기간) ①규칙 제58조에 따라 교부받은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는 반납, 정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유효하다.

②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고 생산되는 품목은 본 규정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기술표준품 표준서가 신규로 제정되거나 폐지되어도 승인 당시의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따라 계속하여 생산할 수 있다.

제28조(수수료) 신청자는 규칙 별표 47에 따른 신청수수료(수입인지)와 기술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정 2005.06.02)

제1조(시행일) ①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07.0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07.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06.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11.16)

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04.08)

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09.25)

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06.11)

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11.26)

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11.12)

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03.06)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02.2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12.03)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01.3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06.0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07.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12.3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02.2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00.0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기술표준품 표준서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표준품 표준서는 다음과 같다.

번 호	기술표준품	유효일자
KTSO-C2d	대기속도 계기 (Airspeed Instruments)	2017.06.02
KTSO-C3e	선회 및 경사계기 (Turn and Slip Instrument)	2017.06.02
KTSO-C4c	자세 지시계 (Bank and Pitch Instruments)	2017.06.02
KTSO-C6d	자이로스코프형 자기방향지시계 (Direction Instrument, Magnetic (Gyroscopically Stabilized))	2017.06.02
KTSO-C6e	자이로스코프형 자기방향지시계 (Direction Instrument, Magnetic (Gyroscopically Stabilized))	2017.06.02
KTSO-C8e	수직속도 계기 (상승율) (Vertical Velocity Instrument (Rate-of-Climb))	2017.06.02
KTSO-C10b	정밀 기압식 고도계 (Altimeter, Pressure, Actuated, Sensitive Type)	2017.06.02
KTSO-C13f	구명복 (Life Preservers)	2017.06.02
KTSO-C13g	구명복 (Life Preservers)	2019.12.30
KTSO-C22g	안전벨트 (Safety Belts)	2019.12.30
KTSO-C23d	개인용 낙하산 (Personnel Parachutes Assemblies)	2017.06.02
KTSO-C26d	항공기 휠, 브레이크 및 휠-브레이크 조립품 (Aircraft Wheels and Wheel-Brake Assemblies)	2017.06.02
KTSO-C27	수상비행기용 쌍 플로트 (Twin Seaplane Floats)	2017.06.02

KTSO-C30c	항공기 위치표시등 (Aircraft Position Lights)	2017.06.02
KTSO-C34e	328.6 ~ 335.4MHz 무선주파수 영역에서 작동하는 항공용 계기착륙장치(ILS) 활공각 수신 장비 (ILS Glide Slope Receiving Equipment Operating Within the Radio Frequency Range of 328.6-335.4MHz)	2017.06.02
KTSO-C35d	항공기용 무선표시기 수신장비 (Airborne Radio Marker Receiving Equipment)	2017.06.02
KTSO-C36e	108-112 MHz 무선주파수 영역에서 작동하는 항공기용 ILS 로컬라이저 수신 장비 (Airborne ILS Localizer Receiving Equipment Operating Within the Radio Frequency Range of 108-112 MHz)	2017.06.02
KTSO-C37d	117.975-137 MHz 무선주파수 영역에서 작동하는 VHF 무선 통신 송신 장비 (VHF Radio Communications Transmitting Equipment Operating Within the Radio Frequency Range 117.975 to 137.000 Megahertz)	2017.06.02
KTSO-C38d	117.975-137 MHz 무선주파수 영역에서 작동하는 VHF 무선 통신 수신 장비 (VHF Radio Communications Receiving Equipment Operating Within the Radio Frequency Range 117.975 to 137.000 Megahertz)	2017.06.02
KTSO-C40c	108-117.95 MHz 무선주파수 영역에서 작동하는 항공용 VOR 수신장비 (VOR Receiving Equipment Operating Within the Radio Frequency Range of 108-117.95MHz)	2017.06.02
KTSO-C43c	온도계기 (Temperature Instruments)	2017.06.02
KTSO-C44c	연료 유량계 (Fuel Flowmeters)	2017.06.02
KTSO-C45b	매니폴드 압력계기 (Manifold Pressure Instruments)	2017.06.02

KTSO-C46a	최대 허용 대기속도 지시계 (Maximum Allowable Airspeed Indicator systems)	2017.06.02
KTSO-C47a	연료, 오일 및 유압 압력계기 (Fuel, Oil, and Hydraulic Pressure Instruments)	2017.06.02
KTSO-C49b	자기 저항 전기 회전속도계(지시계기 및 발전기) (Electric Tachometer, Magnetic Drag(Indicator & Generator))	2017.06.02
KTSO-C55a	연료량 및 오일량 계기 (Fuel and Oil Quantity Instruments)	2017.06.02
KTSO-C56b	엔진 구동식 직류 발전기 및 시동-발전기 (Engine-Driven Direct Current Generators/Starter-Generators)	2017.06.02
KTSO-C62d	항공기용 타이어 (Aircraft Tires)	2017.06.02
KTSO-C62e	항공기용 타이어 (Aircraft Tires)	2017.06.02
KTSO-C64b	승객용 산소마스크(연속공급식) (Passenger Oxygen Assembly, Continuous Flow)	2017.06.02
KTSO-C66c	960-1,215 MHz 무선주파수 영역에서 작동하는 거리측정장치(DME) (Distance Measuring Equipment (DME) Operating within the Radio Frequency Range of 960 ~ 1,215 Megahertz)	2017.06.02
KTSO-C70a	구명정 (Liferafts-Reversible and Nonreversible)	2017.06.02
KTSO-C70b	구명정 (Liferafts)	2019.12.30
KTSO-C71	탑재용 ("DC TO DC") 전력 변환기(항공운송사업 항공기용) Airborne Static ("DC TO DC") Electrical Power Converter (For Air Carrier Aircraft)	2017.06.02
KTSO-C73	전력 인버터 (Static Electrical Power Inverter)	2017.06.02

KTSO-C74d	항공교통관제 레이더 비콘 시스템 (Air Traffic Control Radar Beacon System(ATCRBS) Airborne Equipment)	2017.06.02
KTSO-C76a	연료배출 밸브 (Fuel Drain Valves)	2017.06.02
KSO-C78a	승무원용 산소마스크(수요식) (Crew member Demand Oxygen Masks)	2017.06.02
KTSO-C79	복사열 감지식 항공기용 화재 탐지기 [Fire Detector (Radiation Sensing Type)]	2017.06.02
KTSO-C87	항공용 근거리 전파고도계 (Airborne Low-range Radio Altimeter)	2017.06.02
KTSO-C88b	자동 압력고도 기록부호 생성장비 (Automatic Pressure Altitude Reporting Code-Generating Equipment)	2017.06.02
KTSO-C90c	화물용 팔레트, 네트, 컨테이너 (Cargo Pallets, Nets, and Containers)	2017.06.02
KTSO-C90d	화물용 팔레트, 네트, 컨테이너 (단위탑재용구) Cargo Pallets, Nets, and Containers (ULD, Unit Load Device)	2017.06.02
KTSO-C90e	단위탑재용구 (ULD, Unit Load Device)	2022.02.22
KTSO-C91a	비상위치 송신기 [Emergency Locator Transmitter (ELT) Equipment]	2017.06.02
KTSO-C96a	충돌방지등 시스템 (Anticollision Light Systems)	2017.06.02
KTSO-C103	연속공급식 산소마스크 장비품(비수송류 항공기용) [Continuous Flow Oxygen Mask Assembly (For Non-Transport Category Aircraft)]	2017.06.02
KTSO-C106	대기자료컴퓨터 (Air Data Computer)	2017.06.02
KTSO-C110a	탑재용 수동 뇌우탐지장치 (Airborne Passive Thunderstorm Detection Equipment)	2017.06.02

KTSO-C112c	항공교통관제 레이더 비콘 시스템/모드 S(ATCRBS/ Mode S) 탑재용 장비 (Air Traffic Control Radar Beacon System/Mode Select (ATCRBS /Mode S) Airborne Equipment)	2017.06.02
KTSO-C112d	항공교통관제 레이더 비콘 시스템/모드 S(ATCRBS/Mode S) 탑재용 장비 (Air Traffic Control Radar Beacon System/Mode Select (ATCRBS/Mode S) Airborne Equipment)	2017.06.02
KTSO-C113	항공기용 다목적 전자식 디스플레이 (Airborne Multipurpose Electronic Displays)	2017.06.02
KTSO-C113a	항공기용 다목적 전자식 디스플레이 (Airborne Multipurpose Electronic Displays)	2017.06.02
KTSO-C114	안전구속장치 (Torso Restraint Systems)	2019.12.30
KTSO-C119e	공중충돌경고장치 (TCAS II) Traffic Alert and Collision Avoidance System (TCAS) Airborne Equipment, TCAS II with Hybrid Surveillance	2019.12.30
KTSO-C121b	수중 위치표식 장치(음향식, 자체전원) (Underwater Locating Device(Acoustic, Self-Powered)	2017.06.02
KTSO-C123b	조종실 음성기록장치 (Cockpit Voice Recorder Systems)	2017.06.02
KTSO-C123c	조종실 음성기록장치 (Cockpit Voice Recorder Systems)	2022.02.22
KTSO-C124b	비행데이터 기록장치 시스템 (Flight Data Recorder Systems)	2017.06.02
KTSO-C124c	비행데이터 기록장치 시스템 (Flight Data Recorder Systems)	2022.02.22
KTSO-C126	406 MHz 비상위치 송신기 (406 MHz Emergency Locator Transmitter)	2017.06.02
KTSO-C127a	회전익항공기, 감항분류가 ‘수송’, ‘보통’ 및 ‘실용’인 비행기의 좌석 시스템 (Rotorcraft, Transport Airplane, and Normal and Utility Airplane Seating Systems)	2017.06.02
KTSO-C127c	회전익항공기, 수송용 비행기, 소형 비행기 좌석 시스템 (Rotorcraft, Transport Airplane, and	2022.02.22

	Small Airplane Seating Systems)	
KTSO-C128a	양방향 무선통신에서의 의도하지 않은 전송으로 인한 채널폐쇄 방지장치 (Equipment that Prevents Blocked Channels Used In Two Way Radio Communication Due To Unintentional Transmissions)	2017.06.02
KTSO-C129a	GPS를 이용한 탑재용 보조항법장치 [Airborne Supplemental Navigation Equipment Using The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2017.06.02
KTSO-C135a	운송용 비행기 휠, 휠 및 브레이크 조립체 (Transport Airplane Wheels and Wheel and Brake Assemblies)	2022.02.22
KTSO-C140	항공 연료, 엔진오일, 유압호스 조립체 (Aerospace Fuel, Engine Oil, and Hydraulic Fluid Hose Assemblies)	2017.06.02
KTSO-C142a	일회성 리튬 셀과 배터리 (Non-rechargeable Lithium Cells and Batteries)	2017.06.02
KTSO-C146c	위성기반 보강시스템에 의한 GPS를 이용한 자립형 항공항법장비 (Stand-Alone Airborne Navigation Equipment Using The Global Positioning System Augmented By The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2017.06.02
KTSO-C147	항공교통정보시스템 장비 (Traffic Advisory System (TAS) Airborne Equipment)	2017.06.02
KTSO-C151c	지형인식 및 경보 시스템 (Terrain Awareness and Warning System)	2017.06.02
KTSO-C157a	항공 비행정보 방송용 데이터 링크 시스템 및 장비 (Aircraft Flight Information Services-Broadcast(FIS-B) Data Link Systems and Equipment)	2017.06.02
KTSO-C165	항공기 위치를 그래프로 표시하는 전자 지도 시현 (EMD) 장비 (Electronic Map Display Equipment for Graphical Depiction of Aircraft Position)	2017.06.02

KTSO-C166b	1,090MHz 무선 주파수에서 운용되는 확장 스쿼터 방송형 자동종속감시(ADS-B) 및 방송형 교통정보서비스(TIS-B) 장비 (Extended Squitter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 - Broadcast(ADS-B) and Traffic Information Service - Broadcast(TIS-B) Equipment Operating on the Radio Frequency of 1090 Megahertz(MHz))	2017.06.02
KTSO-C169a	117.975-137.000 MHz 무선주파수 영역에서 작동하는 VHF 무선 통신 송수신 장비 (VHF Radio Communications Transceiver Equipment Operating Within Radio Frequency Range 117.975 To 137.000 Megahertz)	2017.06.02
KTSO-C170	1.5-30MHz 무선주파수 영역에서 작동하는 고주파 무선 통신장비 [High Frequency(HF) Radio Communications Transceiver Equipment operating within the Radio Frequency Range 1.5 to 30 Megahertz]	2017.06.02
KTSO-C175	갤리카트, 컨테이너 및 관련 구성품 (Galley Carts, Containers and Associated Components))	2022.02.22
KTSO-C179	충전식 리튬 셀 및 리튬 배터리 (Rechargeable Lithium Cells and Lithium Batteries)	2017.06.02
KTSO-C198	자동 비행유도 및 조종 시스템 (Automatic Flight Guidance and Control System(AFGCS) Equipment)	2017.06.02

Note: 개별 항공기 기술표준품 표준서는 별도 첨부파일 참조

[별지1]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적합성 확인서

국토교통부		
적합성 확인서 (Statement of Conformance)		
기술표준품 번호 (KTSOA No.)	모델번호 / 부품번호 (Model No. / Part No.)	신청자 (Name of Applicant)
자료 목록(List of Data)		
구 분 (Identification)	제 목 (Title)	
자료용도(Purpose of Data) KTSO-CXXX 인증용 (In support of KTSO authorization)		
적용 요구조건(List Specific Sections of Applicable Requirements)		
적합성 보증 (Conformance Statement) 상기 기술표준품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KTSO-Cxx의 요구조건에 적합하게 설계 및 제작됨을 보증하며, 이에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I certify that the {item name, P/N xxxxxxxx}, have conformance with Article 27 of The Aviation Safety Act and KTSO-Cxx. 20XX. XX. XX 인증책임자(Certification Manager) : 직급(Title) : (서명) 신 청 자(Applicant) : 직급(Title) : (서명)		